

##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

### 금융회사 대표이사 귀하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6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,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데 동의합니다.

**1.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: 예금보험공사**

**2.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**

- (송금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이름)

**3. 제공할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**

-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날 현재의 (계좌번호) 예금계좌 잔액

**4.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**

-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중 발생한 회수관련 비용의 정산

※ 금융거래자(착오송금인)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제공 등의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**5.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**
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종료일

년    월    일

금융거래자 본인 성명(상호) :

(인 또는 서명)
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